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2015. 10. .

국무위원 윤상직
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인터넷 실용신안등록표시방법을 규정하는 한편, 규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15. 00. ~ 00.)

3) 행정규제 :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물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는 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고,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"실용신안등록" 또는 "실용신안등록출원(심사중)"이라는 문자와 그 인터넷사이트의 주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17조제1항 전단 중 "제120조의6까지"를 "제120조의6까지, 제123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실용신안등록표시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6조(실용신안등록표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물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는 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고,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"실용신안등록" 또는 "실용신안등록출원(심사중)"이라는 문자와 그 인터넷사이트의 주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7조(「특허법 시행규칙」의 준용)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·청구,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2, 제2조,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, 제5조, 제5조의2부터 제5</p>	<p>제17조(「특허법 시행규칙」의 준용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
 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
 외의 부분 중 "별지 제14호서식
 의 특허출원서"를 각각 "별지
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
 서"로 본다.

②·③ (생략)

 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	
연락처	(042) 481 - 8243